



제437회국회(임시회)
제2차 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보좌직원 보호제도 마련〉

■ 김미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814호)

2026. 7.

국 회 운 영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김경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미애 · 서명옥 · 정성국 · 이성권 · 박수영 · 김도읍
곽규택 · 박성훈 · 서지영 · 조승환 · 김대식 · 백종현
고동진 · 정연욱 · 이소희 · 한지아 · 김희정 · 김예지
이종배 · 주진우 · 정동만 · 박대출 · 이상휘 · 조배숙
김형동 · 한기호 · 이현승 · 조경태 · 조지연 · 이양수
강대식 · 윤상현 · 안철수의원(33인)

2. 제 안 일 : 2026. 5. 6.

3. 회 부 일 : 2026. 5. 7.

※ 의안번호 : 1881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좌직원은 의원실의 지휘·감독 체계 아래 업무를 수행하는 구성원이며 고용관계상 우월적 구조 속에서 의사결정에 종속될 수 밖에 없는 현실임.

그러나 최근 정치권에서 공직자 또는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사건과 관련하여 보좌직원이 실무자라는 이유로 법적·사회적 책임의 최전선에 놓이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 운영 과정에서 보좌직원의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비한 상황임.

이에 보좌직원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하고, 위법·부당 지시

에 대한 거부권을 보장하며, 보좌직원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보좌직원이 정치적 책임전가의 방패가 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및 제170조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보좌직원에 대한 의원의 지도·감독 책임 및 위법·부당한 지시의 금지를 명시하고, 위법·부당한 지시가 있는 경우 보좌직원이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센터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임(안 제25조의2 및 제170조 신설).

[표-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25조의2(보좌직원의 업무에 대한 부당 지시 배제 등) ① 의원은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좌직원(이하 “보좌직원”이라 한다)을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다. ② 의원은 보좌직원의 업무에 대하여 법령에 위반되는 등 부당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의원이 제2항을 위반하여 보좌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경우 보좌직원은 그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 ④ 사무총장은 보좌직원의 보호 및 부당한 지시에 대한 상담·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⑤ 제3항에 따른 부당한 지시를 받은 보좌직원은 신고센터에 상담을 신청하거나, 이를 신고하고 사실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익명으로 신청 또는 신고를 할 수 있다. ⑥ 의원은 부당한 지시에 대한 거부 또는 제5항에 따른 신청·신고를 이유로 보좌직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현행	개정안
<신설> <신설>	⑦ 제4항에 따른 신고센터의 설치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7장 벌칙 제170조(벌칙) 제25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지시에 대한 거부 또는 신청·신고로 이유로 보좌직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은 그 범위가 매우 포괄적이므로 이를 지원하기 위해 우리 국회는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원 보좌직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¹⁾

의원의 보좌직원은 국가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나 그 임면에 관한 권한이 전적으로 의원에게 속해 있어 의원에 대한 종속성이 강하고, 이로 인해 의원의 업무상 지시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라도 보좌직원이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국회는 최근 국회 구성원의 인권을 더욱 강하게 보호하기 위해 「국회 인권 보호 규정」²⁾을 제정하였고, 국회 내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및 처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국회사무처에 ‘국회인권센터’를 두고 있음.

그러나 국회인권센터는 그 조사 대상이 “의원을 제외한 국회공무원

1) 각 의원은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좌직원 8명과 「국회인턴제 운영지침」에 따라 국회인턴 1명을 둘 수 있음. 이 중 보좌직원 8명은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좌관 2명(4급상당), 선임 비서관 2명(5급상당), 비서관 4명(6·7·8·9급상당 각 1명)으로 구성됨.

2) 국회규정 제988호, 2025.12.31. 제정, 2026.3.1. 시행

및 국회 소속 근로자로부터 당한 인권침해”로 규정되어 있어,³⁾ 의원에 의해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조사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음.

또한, 의원이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지켜야 하는 행동규범인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에는 보좌직원을 성실하게 지휘·감독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나⁴⁾ 이는 선언적인 규정으로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우리 국회는 보좌직원에 대한 의원의 부당한 대우나 괴롭힘을 방지하고 관련 사안을 조사·제재할 수 있는 내부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⁵⁾

이에 개정안은 의원의 보좌직원에 대한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그 지위를 이용하여 위법·부당한 지시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보좌직원이 신고센터를 통해 관련 사안을 상담하고 신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보좌직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보다 합리적인 근무환경이 조성되도록 하려는 것으로,

개정안과 같이 보좌직원의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경우, 의원과 보좌직원의 책임 의식을 고취하고 위법·부당한 지시로 인한 갈등 상황의 발생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3) 「국회 인권 보호 규정」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회 구성원”이란 국회공무원(「국회인사규칙」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을 말한다) 및 국회 소속 근로자를 말한다.
제8조(인권침해 신고 및 조사 대상) 인권센터는 국회 구성원으로부터 당한 인권침해에 대하여 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인지한 사람의 신고를 받아 이를 조사한다.

「국회인사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공무원(국회의원을 제외한다)의 인사행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15조(보좌직원의 임용 및 관리) ③ 국회의원은 그 보좌직원을 성실하게 지휘·감독하여야 하며, 국회가 그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를 국회의원 사무실의 운영경비 또는 보좌하는 국회의원의 후원금 등 여하한 명목으로 다른 목적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전진영, 「미국·영국 의회의 의원과 보좌직원 관계: 고용계약과 고충처리제도를 중심으로」, 『NARS입법·정책』 제171호(2025.11.11.), 국회입법조사처, pp.36~37

다만, 의정활동의 특성상 의원과 보좌직원은 고도의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사안에 따라 업무 지시의 부당성 여부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개정안에 대해서는 그 취지와 함께 의정활동의 신속성 및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임.

또한, 개정안은 의원의 의무 위반에 대해 벌칙을 적용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으나, 현행 「국회법」은 회의장 질서유지 등 일반적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이 아닌 국회의 자율적인 징계절차를 통해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벌칙 규정을 「국회법」에 신설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⁶⁾

한편, 개정안과 동일한 취지에서 보좌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관련 사안의 상담 및 조사를 위한 고충상담창구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⁷⁾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므로, 이를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014

6) 이와 관련하여 국회규칙인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에 현행 「국회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2와 유사하게 의원의 사적 노무 요구 금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위반 시 징계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음. 전진영, 앞의 글, p.38

7) 의안번호 제2212337호, 한지아의원 대표발의(2025.8.25.)